

##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7.

발의자 : 김해영 · 박재호 · 김정우

이찬열 · 전재수 · 윤호중

권칠승 · 최인호 · 민홍철

박남춘 · 양승조 · 박광온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“재해위로금”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.

이에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호).

##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의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재해위로금”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<u>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</u>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.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</u> , <u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</u> 및 <u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</u> 의 ----- ----- ----- .
6. • 7. (생 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